

의안번호	제 52 호
의 결 년 월 일	1998. 11. 27. (제 79 회)

의결사항
원안가결

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8. 11. 24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

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년 11월 24.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1. 제 안 이 유 :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('98. 9.26)에 의거 기관
및 직위 변경

2. 주 요 골 자



- “ 보은군농촌지도소 ” 를 “ 보은군농업기술센터 ” 로 하고
- “ 농촌지도소장 ” 을 “ 농업기술센터소장 ” 으로 함.

3. 근 거 법 령 :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

4. 사전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붙임 1.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신.구조문대비표

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라 한다.

제2조중 “보은군농촌지도소”를 “보은군농업기술센터”로 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농촌지도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농촌지도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·농촌·농업인과 관련된 조사·분석·시험연구·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<u>농촌지도소가</u> 농업개발센터(이하 “개발센터”라 한다)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농업기술센터</u> ----- -(-----)----- ----- --.			
제2조 (위치) 개발센터는 <u>보은군농촌지도소</u> 내에 둔다.	제2조 (위치) ----- <u>보은군농업기술센터</u> -----.			
제4조 (운영)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<u>농촌지도소장</u> 이 운영한다.	제4조(운영)① ----- ----- <u>농업기술센터</u> 소장이 운영한다.			
제5조 (교육훈련)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<u>농촌지도소장</u> 이 정한다.	제5조(교육훈련) ① ----- ----- <u>농업기술센터</u> 소장이 -----.			